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987

발의연월일: 2025. 2. 7.

발 의 자:김교흥・이훈기・유동수

문진석 • 소병훈 • 이학영

신영대 · 강득구 · 허종식

윤준병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어야 하며 하위 시행령(대통령령)에서도 위임·위탁에 관한 세부규정을 두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령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위원회, 특구혁신기획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별도의 명확한 위탁 근거가 없음. 또한 해당 대통령령(시행령) 조문에 따르더라도 규제자유특구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운영은 해당 위원장이특구혁신기획단의 운영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을뿐 명확한 위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사무 수행 권한을 위탁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1조의5 신

설).

법률 제 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14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1조의5(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1조의5(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 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